

군산문화재단 직원 채용계획 공고

군산문화재단에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.

2023년 12월 21일

재단법인 군산문화재단 이사장

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

채용직위	인원	계약기간	담당업무	비고
사무국장	1	1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사무국 업무총괄 및 대외협력경영기획, 공모사업 종합기획 및 지원문화예술 사업 관련 종합기획 및 관리	
경영정책팀 팀원	1	1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문화예술 정책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예산, 복무, 인사, 온/오프라인 홍보, 보도지원 등국가 공모사업 대응 및 신규사업 발굴 지원	
문화예술지원팀 팀원	1	1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문화예술진흥기금 기획사업 추진 등국가 공모사업 대응 및 신규사업 종합 추진 등	

* 위 기재사항은 응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무내용을 개괄적으로 표현한 것임.

* 향후 재계약은 성과평가(국·도비 공모사업 등 추진성과)를 통해 계약 연장 결정

2 채용근거

-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사무국 직원의 임면)
- 군산문화재단 정관 제3장 제21조(직원의 채용)
- 군산문화재단 인사 및 복무규정

3

채용자격 요건

□ 공통요건 (적용 기준일 : 최초 공고일 현재)

- 만 18세 이상인 자(만 60세 정년을 초과하지 않는 자)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□ 응시자격 제한 (적용 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)

- 군산문화재단 인사·복무규정 제1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제15조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 .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9. 채용 비리에 적발되어 재단 직원 채용 합격이 취소된 자 중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

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□ 채용 자격요건 (적용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)

○ 다음 채용예정 분야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

채용직위	자 격 기 준	비고
사무국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자 •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7년 이상의 경력자 •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자 •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12년 이상의 경력자 •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의 경력자 	
팀 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(2024. 2월 졸업예정 포함) •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•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자 •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9급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의 경력자 	

※ 졸업예정자(학사 이상의 학위)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졸업예정일 기준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.

※ 채용예정 직무분야 : 문화기획, 문화콘텐츠, 문화예술분야 등

- 건축, 국악, 무용, 문학, 미술, 사진, 연극, 연예, 영화, 음악 등

※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: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, 전임 근무(1일 8시간)가 아닐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.(예시 : 주 20시간 근무)

4 보수 및 복무

채용직위	채용등급	연 봉	근무시간	근무장소
사무국장	임기제(5급상당)	63,752천원	주40시간	군산문화재단
팀 원	임기제(9급상당)	30,000천원	주40시간	군산문화재단

※ 연봉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연봉액의 하한액

※ 연봉이외에도 수당(별도지급) (수당은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준용.)

5 | 시험방법

□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,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 적합 여부, 경력과의 관련 정도, 적응능력 및 활용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합격 결정

□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대 상 자 : 1차(서류전형) 합격자
- 면접내용 :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- 평정요소 : 재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, 의지력·발전가능성, 직무수행력 등을 판단
- ※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하일 경우 재공고 실시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
- ※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자를 적정인원별로 구분지어 면접진행, 각 조별 최고 득점자중 재면접 실시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.
- ※ 면접결과 공개 :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·중·하의 개수 공개 (단, 평가요소별 상·중·하는 비공개 대상)
- * 국민권익위원회 권고(의안번호:제2023-225호 / 의결 : 2023.2.28.)

6 | 시험시행 일정

□ 응시원서 접수

- 원서접수 : 2024. 1. 3.(수) ~ 1. 9.(화) 18:00까지
- 제 출 처 : (재)군산문화재단 경영정책팀(☎063-454-5816)
(주 소 : 전북 군산시 해망로 146-24(금암동), 3층 군산문화재단)
- 제출방법 :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
 - 방문접수 : 평일 09:00~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 및 토요일·일요일·공휴일 제외)
 - 등기우편접수 : 마감일 도착분(18:00)에 한하며, 겹봉투에 “지원서 재중” 을 표기하기 바람.
 - 이메일 접수 : tagend18@korea.kr (2024. 1월 9일 18:00까지) (스캔본)
- ※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시 지원서 내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시어 제출요망, 제출서류 미비 및 누락의 경우 지원자 책임이며,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.

□ 합격자 발표

- 1차(서류전형) :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
- 2차(면접시험) :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
- 최종합격자 발표 : 홈페이지(군산시, 군산문화재단) ‘시험채용’란 공고

7 제출서류

□ 응시지원서

- ① 응시자격 요건 자가 점검표(별지 제1호의1, 제1호의 2 서식) 1부.
 - 응시자 지원 분야에 따라 선택
- ② 입사지원서(별지 제2호 서식) 1부.
- ③ 이력서(별지 제3호 서식) 1부.
- ④ 자기소개서(별지 제4호 서식) 1부.
- ⑤ 직무수행계획서 (별지 제5호 서식) 1부.
 - 별지 서식을 참고하되 자유롭게 기술(사무국장 A4 10매, 팀원 A4 3매 이내)
- ⑥ 고등학교, 대학교(졸업예정) 등 최종학력증명서 1부. (공고일 이후 발급)
 -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으로 대체 가능
- ⑦ 주민등록초본 1부.(병적사항 포함)
- ⑧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. (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)
- ⑨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(별지 제6호 서식) 1부.
- ⑩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매. (공고일 이후 발급)
 -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
 - 근무기간·직위·직급·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[www.nhic.or.kr] 발급) 등 자료 첨부
 -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‘경력사실 확인증명서(별지서식)’ 추가 제출

- 이력서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) 등 자료 제출
-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
- 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) 내의 서류여야 함.

- ※ ①~⑤, ⑨ 제출서류는 첨부된 서식 사용
- ※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(공증필) 첨부

8 응시자 유의사항

-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 학력 및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및 유효기간 내의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채용조건에 맞지 않거나,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에 집전화,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시고,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보다 적은 경우,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할 예정이며,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(군산시, 군산문화재단) 시험/채용란에 공고합니다.
- 최종 합격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, 채용취소,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 -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납 받을 수 있음. 단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반납하지 않음.
 -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(일반 또는 등기우편) 또는 전자적 방법(홈페이지, 전자우편, 팩스)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.
 - 채용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고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.
 -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.
 -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.
- 문의사항은 군산문화재단 경영정책팀(063-454-5816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